

제 606 호

1977.5.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전화 75-5444

시 보

차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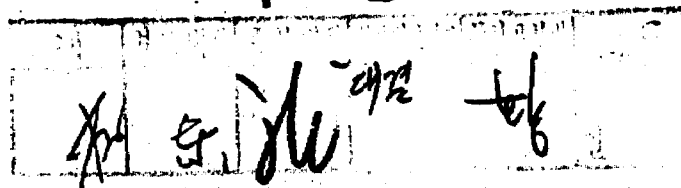
◎ 규 칙			
제 1700 호	서울특별시지정자동차교습소 운영규칙 폐지규칙	3	
제 1701 호	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	3	
◎ 훈 령			
제 470 호	서울특별시고용원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.....	4	
◎ 고 시			
제 116 호	도시가스공사비의 기준액고시.....	5	
✓제 133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, 변경결정및 지적승인.....	6	
제 135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	7	
제 136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	9	
제 137 호	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.....	16	
제 138 호	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 (자동차정류장) 폐지.....	17	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633



 서울특별시청

제 139 호	도시계획용도지구 (고도지구) 결정	18
제 140 호	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결정 및 지적승인	19
제 141 호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19
제 142 호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20
◎ 공 고		
제 92 호	표시정지처분공고	21
제 94 호	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지정공고	22
제 97 호	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	22
제 99 호	환지계획공람공고 (탄천매립지)	23
제 100 호	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지정공고	23
제 101 호	암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에 정지 지정공고	24
제 102 호	환지계획변경공람	24
제 103 호	감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공람 공고	25
제 104 호	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공고	26
제 16 호	(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) : 시험부정 행위자 공고	27

규 칙

서울특별시 지정자동차교습소운영규칙
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7년 5월 3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700 호

서울특별시지정자동차교습소
운영규칙 폐지규칙

서울특별시지정자동차 교습소운영규칙
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
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규칙중 개
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7년 5월 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701 호

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
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위원회규칙중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

1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8 조의
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예산외계
법시행령 제 88 조의 2 제 1 항 및
제 2 항, 제 109 조 제 1 항 제 1 호
제 7 호 및 제 112 조 제 1 항 제
호 제 3 호 제 11 호 제 12 호, 제
14 호내지 제 30 호의 규정에
의하여 제한경쟁, 지명경쟁
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
사안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에
대한 심사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
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고용원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77년 5월 7일

서울특별시시장 구치춘 인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470 호

서울특별시고용원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고용원인사관리규정중 다음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 제 4 호중 " 18 세 이상 40 세까지" 를 " 18 세 이상 45 세까지" 로 한다.

(별 표 1) 고용원 (임시직 포함) :

채용자격기준표중 " 전자계산직 "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 별 표 1 >

고용원 (임시직 포함) 채용자격 기준표

직 종	분 야	자 격 구 분
전자계산직	전자시스템분석자	1.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 년 이상인 자 2.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4 년 이상인 자
	프로그래머	1.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6 개월 이상인 자, 또는 4 년제대학에서 전자계산분야를 전공한 자 2.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1 년 이상인 자
	오퍼레이터 (상)	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경력 1 년 이상인 자
	" (하)	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경력 6 개월 이상인 자
	천공원 (상)	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당해경력 1 년 이상 천공능력 1,500 타 / 10 분 이상인 자
	천공원 (하)	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당해경력 6 개월 이상 천공능력 1,000 타 / 10 분 이상인 자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16 호

도시가스공사비용기준액고시

서울특별시 가스공급 조례제 5 조

제 2 항 및 동시행규칙 제 7 조의 31 의

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사비의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7. 5. 2

서울특별시장

1. 연결공사 (φ 20% 아연도강관) 기준액

명 칭	규 격	수 량	금 액	비 고
가. 재 료 비				
아연도강관	φ 20% (K.S)	1 m	360 원	
비	20% × 20% (K.S 후)	1 개	86 "	
엘 보	φ 20% (K.S 후)	1 "	65 "	
소 켓 트	φ 20% (K.S 후)	1 "	51 "	
포 라 그	φ 20% (K.S 후)	1 "	45 "	
니 플	φ 20% (K.S 후)	1 "	63 "	
유 니 온	φ 20% (K.S 후)	1 "	225 "	
가스콕크	φ 20%	1 "	2,300 "	
가스가랑	φ 20%	1 "	874 "	
나. 시 설 비				
스마트실접합공	φ 20%	1개소	271 "	
새플 설치공		"	40 "	
벽체 천공		"	381 "	

명 칭	규 격	수 량	금 액	비 고
다. 잡 비 재료비감비 시설비감비			재료비 외 7/100 이내 시설비 외 28/100 이내	
2. 제조공사 (연소기구개조) 기준액				
명 칭	규 격	수 량	금 액	비 고
연 소 기 구	1 K	1 개	1,000 원	
개 소 비	2 K	"	1,200 원	
	3 G E	"	1,500 원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3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, 변 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 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 설부고시 제 41 호 (77. 3. 16) 의 권한위임 위탁규정에 의거 이를</p> <p>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인다.</p> <p>1977. 5. 3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

• 도로결정 및 변경폐지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중로	2	144	15 m	850	구로동(대1-58)	구로1공단	
기정	"	1	69	20	3,700	관악구본동 (광장25)	서울대학교남단(광장1호)	
변경	"	"	69	20	3,040	관악구본동 260-3	"	연속 장소
신설	대로	3	115	25	660	본동(광장25호)	본동 260-3	
신설	중로	1	158	20	240	울지로2가(대2-3)	명동1가(중2-11)	
기정	"	2	75	15	417	성수동1가 685-122	성수동1가 656-291	
변경	"	2	75	15	417	"	"	폐지
기정	"	3		12	4,825	마 장 동	행 강 동	
변경	"	3		12	4,825	"	"	폐지

※ 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 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5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109 호(76.7.19)로
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
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
부고시 제 123 호(73.4.4)의 규정
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
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
같음한다.

3.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
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 5. 6

서울특별시장

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서울시중구서소 문동 75-22 ~ 75-80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동방생명 ~ 대한화재간 도로확장공사</p> <p>3. 사업규모 : 폭 = 12 m 연장 = 120 m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</p>	<p>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1977.4.20 ~ 1978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: 별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·성명 : 토지조사</p>
--	--

건 물 조 서

토 지 소 재					소 유 자	
구	동	지 번	지 목	면 적	주 소	성 명
중	서 소 반	120-1	세멘부력	30.4	태평로 2가 233-2	명 승 용
"	"	75-3	"	3	명물동 1가 33-64 용우동 193-17	이 혁 영 김 제 만
"	"	75-83	연와 조	21.8	경북영일군지행면양포리 247	대한냉동 공업 Co.
"	"	75-27	목조와집	4	75	민 재 호
"	"	75-24	"	9	75 - 24	이 우 경

토 지 조 서						
토 지 소 재					소 유 자	
구	동	지 번	지 목	면 적	주 소	성 명
중	서소문	120-8	대	15.9	순 화 동 3-20	박 은 삼
"	"	120-1	"	34.4	태평로 2가 233-2	명 승 용
"	"	75-79	"	30.4	75	대한화재해상보험Co
"	"	75-80	"	34.5	75	"
"	"	75-3	"	3.9	명륜동1가33-64, 용두동197-17	이 덕 영, 김재만
"	"	75-20	"	44.6	75	대한화재해상보험Co
"	"	75-26	"	0.9	대구시창신동 205	제일모직공업 Co
"	"	75-83	"	12.8	경북영일군지행면양포리 247	대한냉동공업 Co
"	"	75-27	"	4.9	75	민 계 호
"	"	75-34	"	23.8	75	대한화재해상보험Co
"	"	75-24	"	11	75 - 24	이 구 경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36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139 호(76.8.26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

한다.
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한다.
3.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7. 5. 6

서울특별시장

<p>1. 사업 시행의 위치 : 충무로 1가~남대문로 2가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퇴계로~율지로입구간 도로확장공사</p> <p>3. 사업규모 : 폭 = 40 m 연장 = 540 m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</p>	<p>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1977.4.20 ~ 1978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·성명 : 토지조서</p>
---	--

건 물 조 서

토 지 소 재					소 유 자	
구	동	지 번	지 목	면 적	주 소	성 명
중	충무로 1가	25-29	철근콘크리트	52.5	삼 청 동 133-2	오 성 립
"	"	25-66	"	37.5	25-11	영화공업 Co
"	"	25-26	"	97.12	돈 암 동 155-1	최 지 하
"	"	25-67	"	194	25-12	심 상 우

토지소재		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 자	
구	동				주	공
중	충무로1가	25-70	철근콘크리트	112	장충동 1 가 121	은사철 서정숙
"	"	25-69	"	162	충무로 3 가 360-3	현만덕
"	"	25-68	"	47	답십리동 474	한성실업
"	명동 2 가	85-3	"	18.3	85-3	백승기
"	"	84	목조와습	10	홍은동 9-188	김훈렬
"	남대문2가	12-1	철근콘크리트	42.5	12-1	이정우
"	"	14-1	"	144.25	동충동 201-10	변근초
"	"	16-4	"	32.2	창천동 72-37	고윤석
"	"	16-6	"	44.8	16-6	백승기
"	"	17-1	"	217	회현동 1 가 100-85	정운창
"	"	18-1	"	143.5	충무로 2 가 65-1	신상근
"	"	19-1	"	185.5	보광동 238-9	윤경숙
"	"	20-1	목조세멘와습	19.43	충무로 3 가 3-102	고성환
"	"	20-4	"	14.35	충무로 2 가 12-4	김경무
"	"	21-1	연와조경옥개	32	명동 2 가 51-3	에스케이 제과 Co
"	"	23-1	철근콘크리트	307.97	23-1	박선양
"	"	23-4	"	57	신설동 98-38	신현국
"	"	25-1	목조세멘와습	40	내자동 200	차영남
"	"	25-4	"	41	신당동 304-46	이종승
"	"	25-6	목조도단습	34.39	25-1	신의환
"	"	26-1	철근콘크리트	36.56	신당동 52-114	유철남 신조
"	"	27-1	목조세멘와습	22	신문로 1 가 213-4	박창 외인
"	"	28-1	"	35.6	이문동 56-72	김길동

토 지 소 재		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 자	
구	동				주 소	성 명
중	남대문2가	28-3	연 와 조	29.3	남산동 2 가 18-5	문영복
"	"	29-1	"	53.32	29-1	박용대 김관성
"	"	31-1	철근콘크리트	107.68		이재성 의 1인
"	"	30	"	61.29	30	강학호
"	"	31-2	"	45.22	동선동 3 가 212-2 연희동 95-34	이매룡 윤기현
"	"	32-5	"	89.12	회현동 1 가 100-128	서효희
"	"	33-1	연 와 조	42.88	33-1	김문경
"	"	34-1	철근콘크리트	37.66		"
"	명동 2 가	85-7	연 와 조	0.9	85-3	백승기
"	"	85-2	"	1.8	269-3	홍정욱
"	"	86-1	"	7.8	회현동 1 가 77	고영준
"	"	87-3	"	4.2	이촌동 302-28	차명상
"	"	97	"	4	회현동 1 가 136	이외출 김영일
"	"	99-1	"	8.6	101	이세문
"	"	101-1	연 와 목 조	11.2	승인동 57-15	박정운
"	"	103	연 와 조	6	원서동 175	박영희
"	"	104-1	"	20.8	충무로 4 가 126	성일공사
"	"	107	철근콘크리트	13.2		중화민국
"	"	108	"	33	원서동 77-1	이근상
"	"	102	연 와 목 조	24.3	답십리동 310-1	남궁경애
"	충무로 1 가	21-6	철근콘크리트	236.9		국 (채신부)
"	남대문 2 가	130-3	"	405	130	한일은행
"	"	140-1	"	536.4	140-1	한국산업은행

토 지 조 서						
토 지 소 계		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 자	
구	동				주 소	성 명
중	충무로2가	25-24	대	1.7	25-25	김기철
"	"	25-25	"	40.8	"	"
"	"	25-29	"	1.1	삼철동 133-2	오성림
"	"	25-30	"	6.8	25-12	심상우
"	"	25-44	"	7.5	25-11	영화공업 주식회사
"	"	25-26	"	23.6	돈암동 155-1	최지하
"	"	25-28	"	0.2	25-29	오성림
"	"	25-67	"	53.1	25-12	심상우
"	"	25-70	"	29.6	장충동 1가 121	은사정숙
"	남대문2가	20-1	"	11	충무로 3가 3-102	고성환
"	"	20-3	"	1.6	"	"
"	"	20-4	"	10.4	충무로 2가 12-4	김경무
"	"	21-1	"	27	명동 2가 51-3	에스피어 제화 CO
"	"	23-1	"	91.3	23-1	박선양
"	"	23-4	"	31.7	신설동 99-38	신현국
"	"	25-1	"	27.8	내자동 200	차연남
"	"	25-3	"	3.1	"	"
"	"	25-4	"	27.2	신당동 304-46	이종승
"	충무로 1가	25-71	"	0.7	"	강전배거
"	"	25-69	"	29.6	충무로 3가 360-3	현만덕
"	"	25-68	"	9.5	달심리동 474	한성산업
"	"	25-74	"	0.3	홍은동 198-5	홍명신 홍희 2인
"	명동 2가	84	"	18	홍은동 9-188	김홍렬
"	"	85-3	"	6.1	85-3	백승기

토기소재		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 자	
구	동				주 소	성 명
중	명동 2가	85-1	대	2.7	필동 2가 130-2	김 분 오
"	남대문 3가	12-1	"	12.9	12-1	이 정 우
"	"	14-1	"	17.4	동승동 201-10	변 군 초
"	"	16-4	"	4.6	창천동 72-37	고 윤 석
"	"	16-13	"	2.4	명동 2가 85-3	백 남 식
"	"	16-6	"	3.8	16-6	백 송 기
"	"	16-14	"	0.9	"	"
"	"	17-5	"	0.5	회현 1가 100-85	정 덕 봉
"	"	17-1	"	33.3	회현 1가 100-85	정 운 창
"	"	18-1	"	21.2	충무로 2가 65-1	신 창 근
"	"	19-1	"	28	보광동 238-9	문 경 숙
"	"	123-4	"	19.4	123	미 도 파 백 화 권
"	"	25-6	"	2.5	신당동 304-246	이 송 승
"	"	25-6	"	17	25-1	신 의 균
"	"	25-7	"	1.4	"	"
"	"	26-1	"	16	신당동 52-114	유 최 춘 최 신 조
"	"	26-3	"	1	"	"
"	"	27-1	"	11.5	신문로 1가 213-4	박 외 창 박 외 인
"	"	28-1	"	10.5	이문동 66-72	김 길 용
"	"	27-3	"	1	회현동 1가 100-3	이 외 성 이 외 인
"	"	27-4	"	11	신문로 1가 213-4	박 외 창 박 외 인
"	"	27-5	"	1	회현동 1가 100-3	이 외 성 이 외 인

토지소재		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 자	
구	동				주 소	성 명
중	남대문2가	28-5	대	12	남산동 2 가 18-5	문 영 록
"	"	25-5	"	2.5	신당동 304-246	이 중 승
"	"	28-6	"	5.2	영률동 2 가 165	김 창 숙
"	"	29-1	"	6.5	29-1	박 봉 매 김 찬
"	"	29-3	"	1	"	"
"	"	29-4	"	5.5	29	김 기 덕 외 2 인
"	"	29-5	"	1	29	김 기 덕
"	"	31-1	"	12	"	이 재 성 외 1 인
"	"	30	"	11	30	강 학 호
"	"	31-2	"	20	동선동 3 가 212-2 연회동 95-34	이 리 중 윤 기 현
"	"	31-5	"	3	"	"
"	"	32-5	"	14	회현동 1 가 100-128	서 효 화
"	"	32-1	"	10	충무로 4 가 126	성업공사
"	"	33-1	"	13	33-1	김 눈 경
"	"	33-3	"	2	"	"
"	"	34-1	"	7	"	"
"	"	34-3	"	2.7	"	"
"	명동 2 가	85-7	"	0.3	85-3	백 승 기
"	"	85-2	"	0.6	269-3	공 정 옥
"	"	86-1	"	1.5	회현 1 가 77	고 영 순
"	"	87-3	"	0.8	이촌동 302-26	차 명 상
"	"	95-2	"	0.6	95	합동도서인 쇄주식회사
"	"	95-3	"	0.1	"	"

토지소재	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	
구	동				주소	성명
중	명동2가	97	대	2.2	회현동1가136	이외출 김영일
"	"	98	"	1.9	101	이세훈
"	"	99-1	"	3.1	"	"
"	"	101-1	"	3.1	승인동57-15	박정운
"	"	103	"	3.2	원서동175	박영희
"	"	104-1	"	10.6	충무로4가126	성업공사
"	"	107	"	8	중과	민국
"	"	108	"	13.1	원서동77-1	이근상
"	"	102	"	8.1	담십리동310-1	남궁경애
"	충무로1가	21-16	"	404		국 (체신부)
"	남대문2가	11-1	"	3.4	10-1	서울신락은행
"	"	130-3	"	236.9	130	한일은행
"	"	140-1	"	242.2	140-1	한국산업은행
"	"	140-8	"	41.5	"	"
"	"	135-4	"	105.4	소광동116-1	서울은행 Co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5 호 ('77.4.14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

-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을 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성농구청 시민

<p>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1977.5.4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산3 의18</p> <p>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학교) 중등 전기고등학교 이전 및 대원중, 고등학교 설립</p> <p>3. 사업의 면적 : 23,736 평방미터 (7,180 평)</p>					<p>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학교법인 대원학원 설립자 이원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갈현동 3의 60</p> <p>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가. 사업의 착수 년월일 : 시행허가일 나. 준공 예정 년월일 : '78.6.20</p> <p>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 권리명세 :</p>				
소	재	지	지	지	소				
성	동	구	중	곡	동				
산	3	의	18	임	야				
24,180 평중, 7,180 평 (수) 조흥은행									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(자동차정류장) 철회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(주차장 및 자동차 정류장) 을 다 음과 같이 결정 및 철회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</p>					<p>부 고시 제41호 ('77.3.16) 에 의거 이불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경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1977.5.6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

○ 주차장 결정조서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 설	노외주차장	종로 6 가 289-3 일대	5,240	터미 날일대
	(공공주차장)	문래 동 77-1 일대	64,460	토지금고토지
○ 자동차 정류장 변경조서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 정 변 경	동대문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	종로 6 가 289-3 일대	9,020	폐 지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139 호</p> <p>도시계획용도지구(고도지구)결정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들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에 따라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 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5.9 서울특별시 장</p> </div> </div>				
가. 도시계획 용도 지구 (고도지구) 결정조서				
구 분	지 구 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 설	최고고도지구	종로구 청운, 통의, 누상, 누하, 필운, 효자, 계부, 옥인, 창성, 궁정, 용인동 일원	519,000	지면으로 부터 15 이하
(도면생략)				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0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운동장)결정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</p>		<p>호('77.3.16)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1977. 5. 7 서울특별시장</p>		
<p>가. 시설결정(운동장) 및 지적승인 조서</p>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운동장 (정구장)	서대문구 용암동 159-1. 4	2,223㎡ (672.5평)	
* 별첨도면생략.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41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(62. 12. 8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(73. 4. 4)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</p>		<p>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다고시로 갈음 함.</p> <p>3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/p> <p>1977. 5. 10 서울특별시장</p>		

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종로구종로3가 138-종로4가 185의3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종로3가-종로5가간 도로확장공사</p> <p>3. 사업규모 : 폭=40m, 연장:720m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</p> <p>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1977.2.1~1978.12.30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 토지조사생략</p>	<p>제123호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</p> <p>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.</p> <p>3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 5.10 서울특별시청</p>
<p>⑤ 서울특별시고시제 14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인 가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12호(72.6.24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제26조 및 건설부고시</p>	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종로구 창신동 616의62~승인동 23의7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동승동, 창신동간 도로개설공사</p> <p>3. 사업규모 : 폭=15m, 연장=1,094m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</p> <p>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1977.4.1 ~ 1977.12.30</p>

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병첨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판재인 주소, 성명 : 병첨 토지조서 생략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margin: 10px auto; padding: 5px;"> <p>공 고</p> </div> 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9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표시정지 처분공고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</p>	<p>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B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 4.2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종 명	규격번호	제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번호	허가년월일
적층건전지	KB C 8507	동양전기산업 (주)	양재범	성동구 중남동 281	746	72.12.30
경질영화비 널 골 판	KS M 3502	삼영화학(주)	이중환	영등포구 신도 림 370-1	733	72.12.22

가. 처분기간 : 1977.5.28 이후 당시의 해제조치가 있을때 까지

나. 표시정지사유 : KB 기준 미달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94 호</p> <p>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신림, 신림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서울특별시 공고 제 78 호(77.4.15)로 공람 공고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동법 제 47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에 따라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공고한다.</p> <p>2.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</p>	<p>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3. 조서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갈음합니다.</p> <p>1977. 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97 호</p> <p>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</p> <p>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거,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,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977. 5. 4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
<p>업 체 명</p> <p>성보전자공업사</p> <p>고 려 전 자</p>	<p>대표자</p> <p>박덕규</p> <p>이은덕</p>	<p>허가번호</p> <p>1-7-19</p> <p>10-1-가</p>	<p>소 재 지</p> <p>영등포구고척동25-2</p> <p>성동구성수1가13-174</p>	<p>취 소 사 유</p> <p>소재지 무단이전</p> <p>소재지 무단이전및개선명칭불이행</p>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99 호

환지계획공란공고 (탄천매립지)

1. 서울특별시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건설부공고 제 38 호 (77.4.2) 로 사업계획 변경인가된 토지 (탄천매립지)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, 미수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1977. 5.

서울특별시장

(환지계획공란내역)

- 가. 사업명 :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면적 : 34,062 평
- 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삼성동 일부 (탄천 매립지)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0 호

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역정지 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 호 (77.4.11) 로 환지계획 공란 공고한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신사동 337 의 4 호의 환지역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정지들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2. 환지역정지 변경도서는 도시정비

<p>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탁에 공합니다.</p> <p>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통지할것이나, 미수명 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 5. 서울특별시 장 - 환지계획변경지정내역 -</p> <p>가. 사업명 : 영동 제1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</p> <p>나. 변경면적 : 572.6 평을 476.4 평 으로</p> <p>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신사동 337 외 4호</p>	<p>2. 환지에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임.</p> <p>3. 공고에 대한 통지문은 별도 토 지 소유자에게 우송될 것이나, 미 수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 다.</p> <p>4.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증명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 실에서 발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5.9 서울특별시 장</p>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01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에정지지정공고</p> <p>1. 암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 56 조 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</p>	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0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지계획변경공탁</p> <p>1.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환지에 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</p>

가. 발생되었거, 환지계획을 변경코저
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
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
람에 공합니다.

2.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
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
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
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
고로 갈음합니다.

1977. 5.

서울특별시 장

(환지 계획 변경 내역)

가. 사업명 :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
획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16,519.40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압구정동 210
의 1호의 47 필지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03 호

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
공 란 공 고

1. 서울특별시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

지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
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
수립하였거, 동법 제 47 조의 규정에
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관계도
서를 공람에 공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
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공고
사항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
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
로서 갈음 하오니, 다음 사항에 유
의 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종전토지 60 평미만 토지 (기존
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) 에 대
하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
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
교부하여 청산키로 하였으며, 아
파트주변도로 및 기타 시설관계
로 일부 가로계획이 변경되었고,

아파트단지 및 집단 체비지 내에 있는 토지는 동용지 확보를 위하여 비환지 계획하였습니다.

나.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 인가시 지시에 의하여 중1-148 호노선 양측에 폭 5 미터의 녹지대를 설치하고 택지의 진입도로를 1 택지당 폭 4 미터의 진입도로 1 개소를 설치키로 하였으며 추후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지계획변경(분할)신청시에도 1 택지당 1 개소의 진입도로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.

1977.5.10
서울특별시장

- 환지계획내역 -

1. 사업명 : 장안평 토지구획정리 사업

2. 시행면적 : 1,932,323 m²
(584,525 평)

3. 사업위치 : 동대문구 장안동 면목동 일부 토지
성동구 군자동 능동 일부 토지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4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
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요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지점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등 요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7. 5. .
서울특별시장

지정업체조서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	77년수출 목표액	비고
986	(주)양영통상	양영홍	영등포구가리봉동 481	겨울	\$ 1,397,000	

끝.

◎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제16호

시험 부정행위자 공고

77.5.5 시행 제 4 회 5 급 울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중 부정 행위자로 적발된 응시자를 지방

공무원 임용령 제 6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공고한다.

1977. 5. 6.

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부정 행위 자

직 령	응시 번호	성 명	생 년 월 일	본 격	주 소	비 고
행정직	1264	서석일	53.5.3 (530503-1808311)	경북 문경군 산양면 송죽리 252 번지	서울 영등포구 신길 5 동 42-89	부정지 전 달
	1267	최원일	40.2.5 (400205-1058025)	서울 관악구 상도동 174-3	서울 영등포구 시흥동산 89 번지	

2. 조치사항

가.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.

나. 77.5.6 부터 82.5.5 까지 5년 간 공무원임용 시험령, 지방공무원임용령, 사법시행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자격을 상실함.

예 규

서울특별시보건의연구소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77년 5월 7일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인

◎서울특별시예규제 344호

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
업무처리 요령

제 1 조 (목적)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(이하 "연구소" 라 한다) 의 시험업무 처리를 체계화 하고 신속정확히 함으로서 최대의 능률과 대민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구소의 시험업무는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.

<p>제3 조 (시험의 정의) 이 요령에서 시험이라 함은 연구소에서 관장하는 검사분석, 검정등의 업무일체를 말한다.</p> <p>제 4 조 (시험의뢰) ① 시험을 의뢰할 때는 별지제 1 호 서식에 의한 의뢰서 및 검체를 제출 하여야 한다. 다만 관공서, 기타 공공단체등으로 부터의 의뢰는 이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에 의하여도 가하다.</p> <p>② 의뢰자가 검체를 제공할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 (별표제 1 참조) 을 제공한다.</p> <p>③ 시험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법 제조법 성분표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 (접수) ① 시험의뢰시 시험용 검체 (시공출) 시험수수료등의 접수는 일체 서무과에서 행한다. 다만, 시험항목 적용범위등 기술적인 것은 해당과장의 자문에 의한다.</p> <p>② 제출된 의뢰서는 우선 접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의뢰자에게는 처리기간을 명시한 별지제 2 호 서식의 접수증을</p>	<p>발급한다.</p> <p>제 6 조 (배부) ① 서무과에서 접수된 문서는 별지 3 호 서식의 시험지시서를 첨부하여 검체와 함께 시험주관 부과에 배부한다.</p> <p>② 시험을 2 개이상의 부과에서 하여야 할 문서는 가장 관계가 깊은 시험주관과에 배부하고 검체는 분할 배부한다.</p> <p>③ 전항의 경우 문서에서도 해당부과를 연서 배부한다.</p> <p>④ 접수된 검체가 변질등으로 시급히 특수장치에 보관을 요하는 것은 즉시 관계부과에 우선 보관케 한다.</p> <p>제 7 조 (각부문서처리) 각과장은 별지 제 4 호 서식의 시험업무 처리부를 비치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매건마다 처리상황을 해당 부장에게 보고후 결재를 득하여 정리 한다.</p> <p>제 8 조 (시험) ① 시험은 별표 1 의 소정기일 및 시공출 소요량 한도내에서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.</p>
---	--

<p>②별표에 정하여지지 않은것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.</p> <p>③시험방법은 국가공정법규에 의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국가 공정법규가 없는것은 소장의 지시 및 관계문헌에 의하여 실시한다.</p> <p>제 9 조 (출장조사) ①현지조사를 요하는 것은 해당부장의 명을 받아 출장조사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출장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책임자 기타 관계자가 입회한후,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③출장조사가 끝나면 조사원은 상세한 조사사항을 부장에게 복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④다만 부장이 출장시는 소장의 명을 받아 출장한후 복명한다.</p> <p>제 10 조 (업무일지) 각과장은 매일 실시한 업무처리 상황을 별지제 5 호 서식의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부장 경유 소장에게 보고한다.</p>	<p>제 11 조 (성적의 작성 및 처리) ①시험주관 과장은 시험을 완료하면 제 4 호서식의 성적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시서 및 의뢰서를 부장과 소장의 결재를 받아 서무과에 이송한다.</p> <p>②성적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정본을 서무과에 부본은 시험주관과에 보관한다.</p> <p>③별지제 6 호의 성적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 하거나 2 건 이상을 동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거나 별도 작성할 수 있다.</p> <p>제 12 조 (성적의 시행) ①서무과에서는 이송된 성적서의 탈자, 오자 및 서식의 적부등을 통제하고 기안문을 필요로 하는것은 기안하여 서무과장 전설로 결재를 얻고 별지제 7 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급하여 의뢰자에게 발송하며 민월일 경우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성적통지서는 의뢰자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며 필요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.</p>
--	--

<p>③시험성적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고 당해 시공품에 한한다.</p> <p>④시험성적은 확정후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. 다만, 발급당시의 주소, 오자, 탈자등의 정정은 예외로 한다.</p> <p>제13조(중간통보) 시험상 부득이 소정기일을 초과하거나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소장의 결재를 얻고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중간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시험관계 서류 보존) 시험관계서류는 서무과에서 보존하되 시험업무처리부는 5년, 성적서는 3년 기타는 1년간 보관한다.</p> <p>제15조(검체의 보관) ①시험을 완료하기 까지 시공품은 각과장 책임하에 엄중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공품중 분한적 유해등으로 판정된 것은 6개월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부패 변질등 기타 검체의 성질상 장기보관이 불가능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제16조(민원업무의 우선처리)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을 우선</p>	<p>처리하고 소정 처리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시공품 및 수수료의 반환) 의뢰자가 제출한 시공품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18조(심의회구성) 감사업무 및 연구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과장급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소장이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19조(타기관과의 연구용역) ①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대한연구소 학회 등 연구기관과 당소 연구직 공무원은 공동 연구원이 되어 연구할 수 있다.</p> <p>②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 연구소 시설 및 장비를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나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</p> <p>③소장, 부장은 위의 기관과의 연구계약상 책임자가 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실험실의 청결 및 외인 출입금지) ①실험실은 항상 청결 정돈하여야 하며 시험관계자 이외는</p>
--	--

<p>일체 출입을 엄금한다.</p> <p>②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중 시험실 직원을 면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무과를 통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면회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시행) 이 요령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</p>	<p>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폐지구정) 서울특별시 예규 제 155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위생시* 현소 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.</p> <p>③(경과조치) 서울특별시 예규 제 155호 서울특별시 위생시현소 업무처리요령에 의해 처리된 업무는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</p>
--	---

〈별표제 1〉

검 체 의 퇴 수 량 및 시 험 처 리 기 한

시 험 종 별	처 리 기 간	검 체 소 요 량
약 품 류	15 일	1. 포장단위 · 2개 이상 2. 권 계 · 100정 이상 3. 액 계 · 500그램 이상
식 품 류	12 일	1. 포장단위 10개 이상 2. 증 량 1킬로 이상
청 량 율 로	12 일	1. 포장단위 10개 이상 2. 물 1리터 이상 3. 증 량 500그램 이상
수 질 관 계	7 일	1. 물 1.8리터 이상
공 해 관 계	15 일	1. 출장조사
하수(폐수)	15 일	1. 물 1.8리터 이상
생물학적세균검사	10 일	
임상학적세균검사	10 일	1. 약 품 20개씩 4.대변 20그램 2. 포 장 10개 이상 5.소변 100개씩 3. 식 중 독 500 6.혈액 5개씩

별지 제 2 호 서식

시 헌 의 퇴 접 수 증

주 소	구	동	번 지	통 반
귀 하				

접 수 번 호	진 명	수 수 로	비 고
---------	-----	-------	-----

--	--	--	--

상기 시헌의퇴를 접수하였습니다.

상기 시험결과 성적서를 월 일 까지 우편으로 송달하여 드립니다.

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

197

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

접 수 자

※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※ 시험을 신뢰하시고 이 동 해 주 십 시 요

별지 제 3 호서식

시 험 지 시 서

시험지시번호

<p>검 체 명</p>	
<p>시 험 방 법</p>	
<p>시 험 주 관 과</p>	

상기 검체에 관한 시험을 지시하니 197 년 월 일
까지 완료 할것.

197 년 월 일

소장 박 재 주

시 험 업 무 처 리 부

별지제 4 호서식

사			접 수		신 청 인		시 험 항 목		수 수 로		처 리 과 정								
소 장	사무장	취급자	월일	접수번호	주 소	성 명	강 제 명	시험목적	전 수	금 액	처리기한	처 리 담당관	일계일자 및수명인	인수일자	지연사유 및예정일	시 험 완료일	성 적 발급일	성 적서 수령인	

별지제 5 호서식 (1) 약종화학과		주 무 과 장						
일 일 <u>업 무 일 지</u>								
금 일 업 무 처 리 내 역			내 일 계 회					
구 분 종 류	금 일 접 수	총 접 수	금 일 처 리		총 처 리		미 결	월 계
			적 합	부 적	적 합	부 적		
정 장 계								
소 화 계								
영 앙 계								
연 고 계								
의 용 계								
합 성 계								
구 승 계								
항 결 액 계								
실 파 계								
소 염 계								
훈 문 계								
기 타								
일 계								
관 원								
민 권								
총 계								

별지 제 5 호 서 식 (2) 독극물과 월 일 <u> </u> <u> </u> 일 기						주 무	과 장	
금 일 업 무 처 리 내 역				내 일 계 획				
구 분 종 류	금 일 접 수	총 접 수	금 일 처 리		총 처 리		미 결	월 계
			적 합	부 적	적 합	부 적		
다 약								
만 외 마 약								
방 역 약 품								
살 서 제								
살 흥 제								
기 생 재 료								
의 료 용 구								
과 장 품								
해 열 진 통 제								
습 관 성 의 약 품								
기 타								
일 계								
관 원								
민 원								
총 계								

1653

제 5 호 서 식 (3) 식물위생과 인 부 일 지													과 장		
	관						민						미		
	집 수		처 리				집 수		처 리				관	민	국
	인	수	적	합	부	적	인	수	적	합	부	적	관	민	국
식물첨가물															
청량음료															
주 류															
빙 과 류															
대 주 류															
유 지 류															
어 육 제 품															
식 육 제 품															
유 제 품															
응 기 류															
다 류															
이 유 식															
동 근 림								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
총 계															

제 606 호 시 보 1977. 5. 7 45-39

별지제 5 호서식
(4) 식품분석과

업 무 일 지
1977 년 월 일 요일

과 장

	민 원						관 원						미 결		
	접 수			처 리			접 수		처 리				관	민	계
	일	계	계	합	부적합	계	일	수	적	합	부적합	계			
													일	수	일
방 류															
건 과 류															
사 탕 류															
동 조 립 류															
장 류															
향 신 료															
당 류															
야 채 류															
면 류								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
누 계															

제 606 호 시 보 1977. 5. 7

별지제 5 호서식
(5) 대기보전과

업 무 일 지

197

과
장

구 분	접 수		당 일 처 리				처 리 수 계				미 결
	일계	누계	합격	불합격	기 타	계	합 격	불합격	기 타	계	
대 연											
대 연 진											
면 지											
파 스											
악 취											
소 음											
진 동											
중 금 속											
소 계											
대 연											
면 지											
파 스											
악 취											
소 음											
진 동											
중 금 속											
소 계											
입 소 수											
특기사항											

별지 제 5 호 서식
(6) 수질보전과

1977년 5월 1일 요일장
업무일지

항목	관						민						의		
	접수		처리				접수		처리				관	민	의
	일	수	적합		부적합		일	수	적합		부적합				
			일	수	일	수			일	수	일	수			
정호수															
폐수															
상수도수															
불장수															
식용얼음															
합강수															
수질조			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
비고															

45-42 제 606 호 시 보 1977. 5. 7

별저제 5호서식 (7) 세 글 과											
일 일											
<u>업 무 현 황</u>											
	구 분	금일 접수	금 일 처 리			접수 누계	처 리 누 계			미 결	불 합 격 항 목
			합격	불합격	계		합격	불합격	계		
보 글 자	기										
임 상	기										
식 기 류	기										
약 품	기										
수 질	기										
유 지 류	기										
병 과 류	기										
어 유 제 품	기										
청 양 . 다 목	기										
동 초 립	기										
방 류	기										
유 재 품	기										
기 타	기										
일 계	기										
누 계	기										

별지제 6 호서식		과장	부장	소장	결 재
<u>시 험 성 적 서</u>					
접수번호					
1. 의뢰자주소성명					
2. 제조자주소성명					
3. 시 공 품 명					
4. 제 조 년 월 일					
5. 접 수 년 월 일					
6. 시 험 목 적					
7. 시험 완료월일					
8. <u>성 적 (시험결과)</u>					
<p>시험 담당자 ①</p>					
<p>※ 성적 기재란의 지면부족 혹은 부적당할 때는 별지를 사용하고 간인한다.</p>					

별지 제 7 호서식	
<u>시 험 성 적 통 지 서</u>	
접수번호	
1. 의뢰자주소성명	
2. 제조자주소성명	
3. 시 공 품 명	
4. 제 조 년 월 일	
5. 접 수 년 월 일	
6. 시 험 목 적	
7. 시험 완료월일	
<p>상기 시공품을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아옴거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보건연구소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. 성 적 (시험결과)</p>	